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안내

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관할구역 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적용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특정지역에 먼저 적용함으로써 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행양상에 따라 새로운 방역수칙이 효과적으로 반응하는지 등을 분석·평가하여 장기간 이어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한편,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내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안 1단계보다 강화된 조치(예: 모임인원 기준 강화, 여행지 방역관리 강화, 고령층 대상 방역대책 수립 등)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계상향 조치시 방역강화 조치는 거리두기 개편안의 단계별 조치기준에 의할 것

○ 적용 기간 : 2021년 6.14.(0시) ~ 2021년 7.4.(24시)까지

○ 대상 지역 :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적용 단계 : 개편안 1단계

①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 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편·홀덤편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업소, 국제회의장,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② 모임·행사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행사) 참여인원 300인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관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자체 방역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협의

<협의 대상 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대규모콘서트, 종교행사는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 수칙 적용

- (집회·시위) 300인 이상 금지(300인 미만 집회·시위 방역지침 의무화)
- (시험)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방역수칙 준수

붙임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③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④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 탄력적 운영가능

⑤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⑥ 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⑨ 학교(등교)

-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 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4.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붙임)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업종별 협·단체

주무관 **박혜수** 과장 **김재준** 전결 2021. 6. 15.

협조자

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696 (2021. 6. 15.)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4222 팩스번호 044-203-4722 / oyeah5@motie.go.kr / 대국민 공개